

사고수표예탁금 담보보관금 국고귀속 공고

보령우체국 공고 제2017-9호

보령우체국에서는 보관의무 기간이 경과한 **사고수표예탁금 담보보관금** 대하여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[국고예의 귀속]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고귀속을 공고합니다.

다 음

1. 국고귀속일: 2017. 7. 14.(금)
2. 국고귀속범위
정부가 보관하는 보관금은 법률로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관한 다음날로부터 계산하여 5년이 지나도 환불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.
3. 국고귀속 대상: 2명(별도첨부)
4. 공고 기간: 2017. 6. 13.(화) ~ 2017. 7. 13.(목)
5. 공고 장소: 보령우체국 홈페이지(<http://www.koreapost.go.kr/se/138/>) 및 공중실
6. 환급 기간: 공고기간 내 (2017. 6. 13.(화) ~ 2017. 7. 13.(목).)
7. 환급 장소: 보령우체국 영업과
8. 구비서류
가. 담보금 환급 청구서, 영수증(계약자 인감 날인) 1부.
나. 정부보관금수령증서(분실시 분실 확인서) 1부.
다. 사고신고인 명의 계좌이체 통장 사본 1부.
라. 실명확인증표 사본 1부(법인-사업자등록증 사본, 개인-신분증 사본).
마. 위임장(사고신고인 인감 날인, 오시는 분 신분증) 1부, 인감증명서 1부.
※ 구비서류 양식: 가,나,마 양식(별도첨부)
9. 기타 문의사항은 보령우체국 영업과 금융담당(041-930-7740)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2017년 6월 13일

보령우체국장